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32호 2022. 6. 24.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89호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9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5
- 삼척시 고시 제9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8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717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안) 열람 공고 ----- 11
- 삼척시 공고 제719호 삼척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2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2 - 8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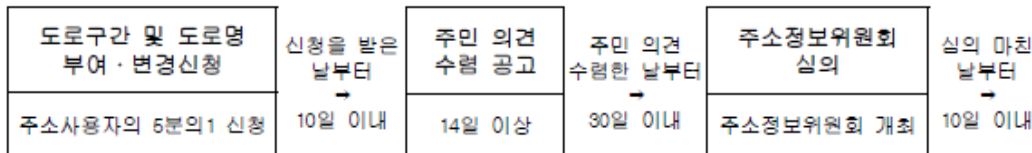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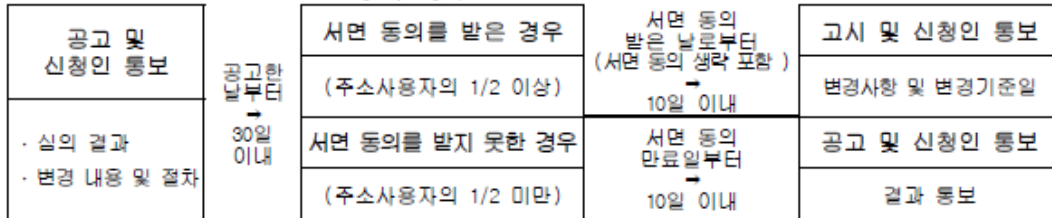
2022. 6. 21.

삼척시장

- 고시일 : 2022. 6. 21. (화)
-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 고시내용 :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2건 (조서 및 위치도 참조)
- 도로명의 부여·변경 절차



<변경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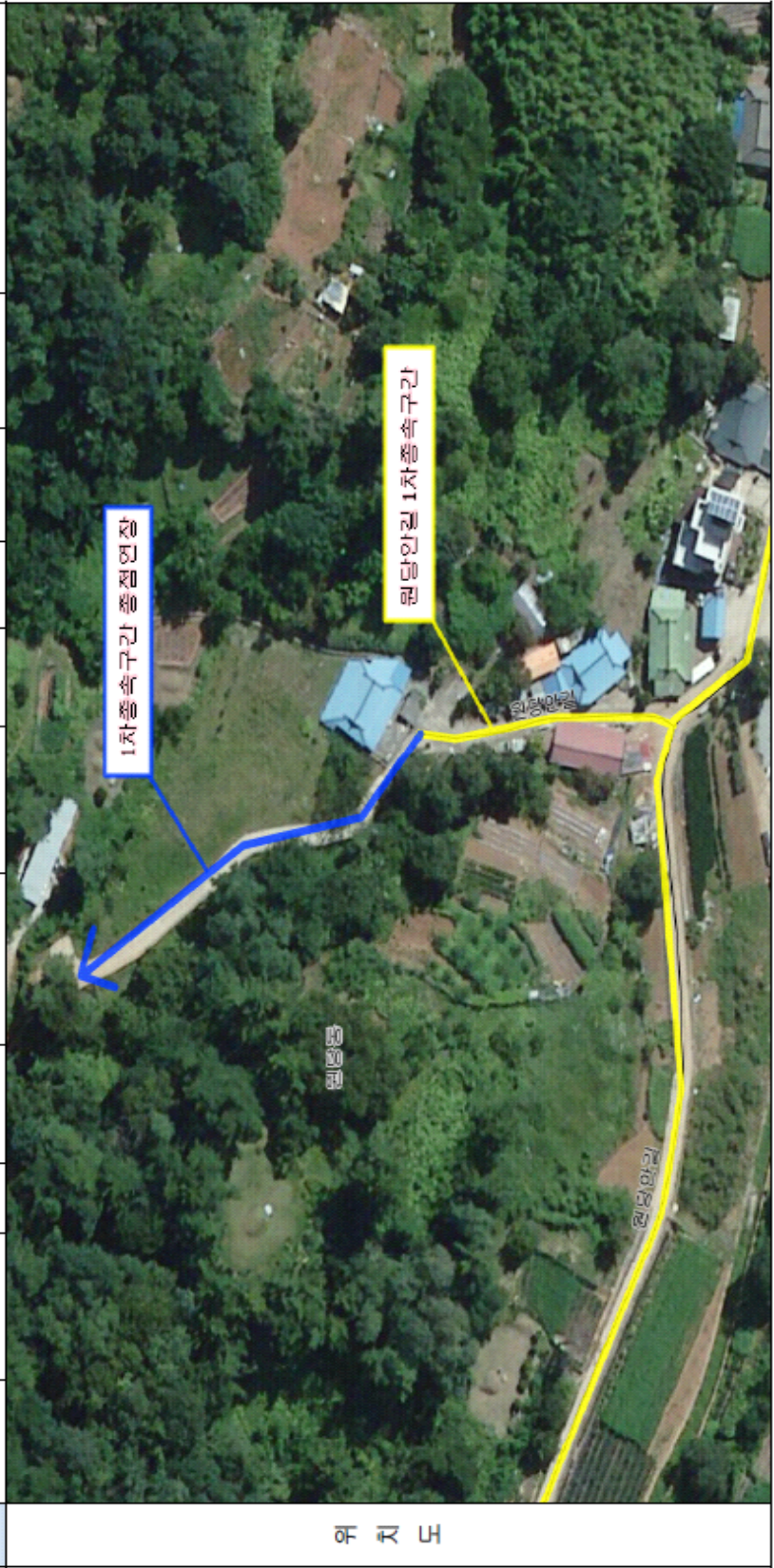


-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 변경 및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사용할 수 없음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 지적정보부서(☎033-570-39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위치도

조서	구분	도로명	도로위계	관할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m)	기초번호	변경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m)	폭(m)			
	변경 전 (기준)	원당안길	길	성내동	원당동 산 21-1	원당동 167-3	48	4	5	58-1→ 58-20	도로구간 종점연장
	변경 후	원당안길	길	성내동	원당동 산 21-1	167-3	123	4	5	58-1→ 58-50	



위 치 도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 생략.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위치도

조서	도로명 미근로 (1차종속구간)	도로 위계 로	관할행정 구역 근덕면	도 로 구 간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동 일 도로명	변경 사유
				시작지점 교곡리 993-31	끝지점 교곡리 31	길이 (m)	폭 (m)				
			근덕면	교곡리 993-31	교곡리 31	456	5	20	1609-1 → 1609-46	없음	기초번호가 없는 도로구간에 1차 종속구간 신설



위 치 도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전수령 및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 생략.

삼척시 고시 제2022 -9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21.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609-32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25-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609-32	2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25-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609-3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609-32	20220621	20220621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미로,노곡,근덕)연결 구간 시종점지역명칭활용(미로,근덕)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원당동 산21-1	강원도 삼척시 원당동 산21-1	강원도 삼척시 원당안길 59-50 (원당동)	20220621	20220621	기존 건물	20090626	지역지명고려	

삼척시 고시 제2022 -9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24.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36-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4길 266	20220624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일련번호방식)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36-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4길 266	20220624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중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1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권덕읍 기곡리 36-1	강원도 삼척시 권덕읍 기곡4길 266	20220624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 사용(일련번호방식)	

삼척시 공고 제2022-717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안) 열람 공고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당동 서부초등학교 진출·입도로 신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그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4일

삼척시장

가. 주요 내용: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소로1-48(원당동) 신설: 폭 10m, 연장 71m

나. 열람기간: 2022. 6. 24. ~ 2022. 7. 8. (15일간)

다. 열람장소: 삼척시청 도시과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및 도면: 열람 장소 비치

마. 열람 기간 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삼척시장(도시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관련 기타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2-719호

「삼척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3일

삼척시장

삼척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재난업무 보조 활동의 지속성 확보 및 의용소방대 소속감 제고 등 활동 지원의 명확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삼척시 의용소방대 지원 목적 (안 제1조)
 - 재난 발생시 화재진압 및 소방업무 보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본 조례는 관내 의용소방대에 적용됨
- 다.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및 일부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라.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예방활동에 기여한 의용소방대를 포상 할 수 있음
- 마. 준용규정 (안 제5조)
 - 경비지원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7월 13일까지 삼척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재난안전과
- 2) 전화 : 033-570-3883
- 3) 팩스 : 033-570-3178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광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삼척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비용
3.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소방홍보 경비
4. 의용소방대원 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안전 교육훈련 경비
5. 그 밖에 재난대응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 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활동비 지원)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군 관할구역 내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한 장비(「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비를 포함한다)·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전술경연대회 소요경비
3. 시·군 관할구역 내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소방홍보 경비
4. 지역주민 대상 소방안전 교육훈련 경비

[붙임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